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690

2026. 3. 26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. 3. 13. 이향숙 의원 등 7인

나. 상정의결

- 제3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(2026. 3. 26.)
  “수정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대표발의자 : 이향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행정 환경이 변화하면서, 경험과 직관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·과학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. 이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·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, 행정 혁신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
○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

○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사업 및 대상 업무 발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

○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
○ 데이터플랫폼, 데이터 수집·관리와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)

○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과 평가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2조 및 제13조)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○ 예산조치 : 논의 필요

○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미영)

Ⅰ. 개요

□ 이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제정안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·과학적 행정을 통해 강남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, 신뢰성을 제고하고자,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□ 입법 배경 및 필요성

○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일상화로 각종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등에 있어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이 중요해졌음.

○ 더욱이 인공지능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인공지능 전환

(AI transformation, AX)을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함.

○ 그런데 2020. 6. 9. 제정되어 2020. 12. 10.부터 시행하고 있는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만 규율하고 있을 뿐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았음.

○ 이에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·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26. 2. 27.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면서 법률 제명이 「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되었으며, 개정 법률은 2026. 8. 28. 부터 시행될 예정임.

○ 이미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이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한 만큼 행정에 있어서도 인공지능 시대 본격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.

○ 그런 점에서 볼 때 본 제정안은 강남구 행정에 있어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, 이는 「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자체의 책무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.

○ 참고로,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에서 강남구는 “2022년(보통), 2023년(보통), 2024년(우수)” 평가를 받았음.

Ⅱ. 주요 내용 검토

□ 총칙 규정(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)

○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구청장의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한 총칙 규정임.

○ 본 제정안에서는 제명 및 조례 전반에 걸쳐 “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, 이와 관련하여 「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을 살펴보면, 법에서는 “인공지능기반행정”과 “데이터기반행정”에 대해 각각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있고, 이를 함께 이르러 “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”으로 약칭하고 있음.

○ 그런데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“인공지능기반행정”에 대해서는 별도 용어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은데, 본 제정안은 「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, 자치법규의 이해와 집행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상의 용어 사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바, 이에 대한 수정 의견은 아래 표와 같음.

제 정 안	수 정 의 견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인공지능”이란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. 2. “데이터기반행정”이란 「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. 3. “공공기관”이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,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인공지능기반행정”이란 「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반행정을 말한다. 2. “데이터기반행정”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을 말한다. 3. (제정안과 같음)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	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데이터기반행정(이하 “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”이라 한다)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(안 제5조)

○ 안 제5조는 「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규정 사항을 재확인한 것인데, 일반적으로 상위법의 규정 내용을 단순 확인 · 재기재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정 실익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.

○ 만약, 해당 조문을 그대로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시행계획이 법정계획인 점을 고려하여 상위법상의 계획명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, 안 제5조 외에 제정안의 다른 부분에서는 본 계획명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약칭 사용 또한 불필요한바 이에 대한 수정 의견은 아래 표와 같음.

제 정 안	수 정 의 견
제5조(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)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제5조(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)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□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관련 추진 사업·분야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
○ 안 제6조(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)에서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하였고, 안 제7조(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의 발굴 및 추진)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 발굴 분야를 규정한 것으로, 구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·유도·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.

○ 참고로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결과 우수사례는 아래와 같으며, 구 현안 및 구민의 다양한 행정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및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임.

○ 한편, 자치법규의 조문에는 규정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 제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, 안 제6조의 규정 내용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“사업”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 제목을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.

제 정 안	수 정 의 견
제6조(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) 구청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1. ~ 5. (생 략)	제6조(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) 구청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1. ~ 5. (제정안과 같음)

□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(안 제8조)

○ 안 제8조(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)의 규정 사항은 「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임명해야 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려는 것임.

○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서는 자치구의 경우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(강남구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 현황: 미래문화국장), 개정 법률에서는 임명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, 본 제정안에서는 현행 법령에 준하여 소관 업무 국장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임명토록 규정한 것으로 보임.

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현행)	「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2026. 8. 28. 시행 예정)
제19조(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)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(이하 “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”이라 한다)을 임명하여야 한다. **※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요건(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)** **- 시·군·구: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**	**제19조(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)**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(이하 “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”이라 한다)을 임명하여야 한다.

○ 한편, 「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권자는 “구청장” 인 것으로 보이는바, 본 제정안에서 소관 국장을 임명토록 규정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 의사 확인은 필요해 보임.

○ 또한,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은 법에 따른 사항이므로 법률상의 표현 통일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 의견을 제시함.

제 정 안	수 정 의 견
제8조(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)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(이하 “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”이라 한다)을 임명하여야 한다.	제8조(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)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(이하 “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”이라 한다)을 임명하여야 한다.

□ 데이터플랫폼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○ 안 제9조(데이터플랫폼)는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시스템 상호연계・통합, 공동활용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공공기관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취지로 이해됨. 현재 우리구는 “데이터 강남 플랫폼” 을 구축・운영하고 있으며, 제정안에 관련 근거 마련을 계기로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[데이터 강남 플랫폼 현황]

연도	주요내용	소요예산 (구축+운영)
2020 (전산정보과)	○ 공공데이터 관리 및 활용 통합 플랫폼「스마트 비전 강남 플랫폼」 구축 (6월~12월) (전산정보과) - 접속 url : http://98.23.7.15:8080/gn/main.do ○ 구청장실 DID(Digital Information Display) 설치 (9월) - 본관 3층 제1작은회의실 / 155인치(5,760 × 2,160 pixel) ○ 재난정보(재난, 화재, 수방 등) CCTV 영상 실시간 모니터링	360,000천원
2021 (스마트정보과)	○ 스마트강남 구청장실 기능개선 추진 (1월~5월) - CCTV 표출 영상 확대 - 코로나19 메뉴 및 힐링센터, 주택건설 현황 지도 구현 등	21,340천원
	○ 스마트강남 구청장실 고도화 (6월~11월) - 2022.1.1. 모바일, 홈페이지용 대민서비스 오픈 (http://sog.gangnam.go.kr)	316,000천원
2022 (스마트도시과)	○ 2022년 스마트강남 정보시스템 운영 (4~12월) - 구청 민원실 DID 설치 (4월) · 본관1층 엘리베이터 옆 / 98인치(3,840 × 1,829 pixel) - 중대재해예방상황판, 국공립시설 등 23종 추가 및 기능개선	189,600천원
2023 (디지털도시과)	○ 2023년 스마트강남 정보시스템 운영 (1월~12월) -「데이터 강남 플랫폼」 명칭 및 DID 구조물 변경 (3월) - 강남의「옥에 티를 찾아라」이벤트 개최 (7월~9월) - 실시간 도시데이터(인구혼잡도), 공공데이터, 구민과 함께 등 신설	134,000천원
2024 (디지털도시과)	○ 2024년 데이터 강남 플랫폼 운영 (1월~12월) -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분석 실시 ⇒ 8종 - 구정 이슈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신규 콘텐츠 구현 ⇒ 4종(생활편의 정보, 공공시설 현황 등) - 플랫폼 정기 점검을 통한 장애 예방	164,000천원
2025 (디지털도시과)	○ 2025년 데이터 강남 플랫폼 운영 (1월~12월) -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분석 실시 ⇒ 8종 - 구정 이슈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신규 콘텐츠 구현 ⇒ 4종(공공시설 및 기부채납 현황판, 스마트 강남 소식 등) - 플랫폼 정기 점검을 통한 장애 예방	158,000천원

(자료: 디지털도시과)

□ 그 밖의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본 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데이터 수집·관리에 관한 사항,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,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

등을 규정한 것이고,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6년 8월 28일로 규정한 점은 제정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「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임.

Ⅲ. 종합 의견

□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우리사회 각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이 보편화·일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,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인 「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, 행정에 있어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도입·활용은 더욱 고도화,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.

이에 본 제정안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 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 됨.

앞으로의 행정서비스의 질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역량이 좌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복잡한 구정 현안과 구민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 요구에 선제적·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·활용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,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 함에 있어 정보 기술 의 양면성을 유념하여 안전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본 조례안의 입법 목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없음”

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
6. 심사결과 : “수정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.
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. 끝.